

最近 主要 法規의 制定 및 改正 內容要旨

법 규 명 (분류 및 공포)	제·개정 내용 요지
소방공무원법 (개정, 2001.5.24, 법률제6485호)	○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 수행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외에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경우도 국가유공자로 지정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2001.4.7, 법률제6469호)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던 생태계보전지역의 토지매수가격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수욕장등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에 인접하거나 도로변에 있는 숲의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출입취사 또는 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부과하던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의 훼손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국방목적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가 생태계를 복원한 경우에는 이를 환불할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01.5.24, 법률제6480호)	○ 연기금을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전액 면제하며, 상장주식 등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 배당소득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개인 소액주주의 장기보유주식 요건을 3년에서 1년이상으로 단축하고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이하인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비과세함 ○ 대도시안에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증과세(3배)를 배제, 회사설립비용의 부담을 완화함

법 규 명 (분류 및 공포)	제·개정 내용 요지
청소년보호법 (개정, 2001.5.24, 법률제6479호)	○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미만으로 하되, 만19세미만이라도 당해 연도중에 만 19세가 되는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 ○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을 제공하는 자는 그 상배방의 연령을 확인해야함
예산성과금규정 (개정, 2001.4.9, 대통령령제17195호)	○ 국고의 수입이 증대된 경우와 같이 국유재산이 증대된 경우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함 ○ 국가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또는 채택된 국민제안의 시행으로 인해 지출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함 ○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의 건당 지급한도를 없애는 등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한도를 일부 조정함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개정, 2001.4.12, 건교부령제276호)	○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축사를 허가받아 물푸창고 또는 공장 등으로 불법전용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을 훼손시키는 사례의 방지를 위해 축사의 허용규모를 종전의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를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내의 경우는 500제곱미터 이하로 하향조정함 ○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의 생활편의사무 중심으로 전환되어 단속사무등이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의 열람·사본·교부등의 업무를 읍·면·동장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행하도록 변경함
국민연금법시행규칙(개정, 2001.4.2, 보건복지부령제193호)	○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을 1월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경우로 납부의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때등으로 정함 ○ 공단이 압류한 재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시킨 경우에 실제로 매각한 때에는 매각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등 매각대행수수료의 기준을 정함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개정, 2001.5.8, 건교부령제281호)	○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집단취락이 있어 집단취락지구로 입안하는 경우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설용지지구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더라도 준도시지역으로 입안할 수 있음 ○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구역 및 군용항공기지구역의 경우에도 관할 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쳐 취락지구 또는 시설용지지구로 입안하는 경우에 한하여 준도시지역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함

법 규 명 (분류 및 공포)	제·개정 내용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 규칙 (개정, 2001. 4.3, 재경부령제193호)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스인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 또는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과세기간종료후 20일이내에 개설 또는 발급된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압세자의 편의를 제고함 ○ 금융기관이 감가상각자산을 대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금융보험업의 범위내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함 ○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 2001.4.3, 재경부령제195호)	○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종전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3년간의 평균순손익액 대신에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특별손익이 통상의 경우보다 과도하게 많이 발생한 경우등 과거 3년간 순손익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한하여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도록 함 ○ 패권의 평가는 원본의 가액에 미수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하되,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등의 사유로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함 ○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이자율이 종전에는 1일 1만분의 3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하여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이자율이 시장금리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여지도록 함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 2001.4.30, 재경부령제202호)	○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인정하고 있는 선원의 생산수당 및 승선수당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적용대상에 항해사·기관사·통신사·운항사 등을 추가함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중고 취득자산의 범위를 법인 또는 다른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을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이 경과한 자산으로 함 ○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의 범위에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뇌성마비복지회·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및 한국수양부모협회를 추가함
재정차관자금관리 규칙 (개정, 2001.5.7, 재경부령제203호)	○ 재정차관자금원리금을 송금하는 금융기관이 이를 송금하기 위하여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송금일 오전 10시의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한 환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송금일에 외환수요가 집중되어 환율이 급등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송금일 전일의 외환매매율을 그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환율을 적용하도록 함

법 규 명 (분류 및 공포)	제·개정 내용 요지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 2001.4.17, 행자부령제133호)	○ 세무행정의 편의도모를 위해 현재 수기용으로만 되어 있는 주민세소득세 할 납부서 및 주민세 소득세할 납세고지서를 수기용 및 전산용서식으로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지방교육재정교 부금법시행규칙 (개정, 2001.4.17, 교육인정자원부 령제782호)	○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을 “교육비차이도계수”에서 “경비별 소요액 산정” 방식으로 전환 ○ 기준재정수요액은 경상재정수요와 사업재정수요로 구분하되, 경상재정수요 (인건비·기관운영비·학교운영비)는 표준단가로 산정하고, 사업재정수요 (학교신증설비·교육환경개선비·제7차교육과정대비시설비·교육정보화비·기타사업비)는 실소요액으로 산정하고 총가용재원의 10분의 3의 범위내에서 교육인정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기준재정수입액중 신설된 지방교육세는 경기변동에 따라 세수증감이 발생하여 시·도간 재정불균형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다음연도에 정산하도록 함 ○ 시도별 교부금은 경상재정수요액은 총액으로, 사업재정수요액은 사업별로 교부하도록 하고 시도별로 교부하여야 할 금액이 교부금규모를 초과할 경우 이를 조정하여 교부하도록 함 ○ 제도개선에 따른 재정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증감분을 연차적으로 조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재정투·융 자사업심사규칙 (개정, 2001.4.6, 행자부령제130호)	○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재심사 대상사업의 범위를 종전에는 사업비가 50%이상 늘어난 사업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비증가율이 50%미만인 사업중 증가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도 재심사를 받도록 함 ○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특별교부세·지방양여금 및 시·도비를 지원하거나 지방채발행의 승인을 할 수 없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투자심사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을 및 추진상황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함